

부속서 6-다

금융서비스

1. 적용범위 및 정의

가.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한다. 이 부속서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제6.1조에 정의된 서비스 공급의 형태를 말한다.

나. 제6.1조에 정의된 “서비스”의 목적상,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 1)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
- 2)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적퇴직연금제도를 구성하는 활동, 또는
- 3) 그 정부의 계정으로, 보증하에 또는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의한 활동

다. 제6.1조에 정의된 “서비스”의 목적상,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나호의 2)목 또는 3)목에 언급된 활동을 공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서비스”는 그러한 활동을 포함한다.

라. 제6.1조에 정의된 “정부권한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이 부속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제6.1조에 정의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서비스 공급자”란 제8항에 정의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각각 말한다.

2. 국내규제

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 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그 밖의 관련 장의 규정과 불합치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장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고객의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나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인정

- 가.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국제규범 제정기구 또는 비당사국의 전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관련 국제규범 제정기구나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 나. 향후 체결될 것이거나 현재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호에 언급된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감독·그러한 규제의 이행 및 적절한 경우, 그 협정 또는 약정의 양 당사자간에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는 상황하에서는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그와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 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할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나호에서 언급된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4. 투명성

- 가.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외국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 나.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구체적 약속이 수행되는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 다. 제6.20조를 대신하여,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다.
 - 1)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 2) 그러한 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 라.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마.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규정

의 공포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 바. 각 당사국은 자국의 자율규제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 사.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 아.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이해관계인이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 자.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차.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에 행정적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신청자의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 또는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각 경우에 맞게,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 카.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5. 일정 정보의 취급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 나. 공개될 경우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 정보, 또는
- 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혹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6. 신금융서비스

- 가. “신금융서비스”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

해서가 아닌,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금융서비스이며, 이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을 포함 한다.¹⁾

나.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²⁾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6.4조제2항마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전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7. 분쟁해결

전전성 문제 및 그 밖의 금융상의 사안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14장(분쟁해결)상 양 당사국에 의하여 합의되거나 임명된 중재패널은 분쟁 중인 특정한 금융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성을 갖는다.

8.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모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2) 비생명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1) 양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는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만 현재 존재하는 것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통제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 위치한, 지점을 포함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라. 상담·계리·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바. 소비자신용·담보대출·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사. 금융리스

아. 신용·선불·직불카드·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정

차. 거래소 및 장외시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정 또는 고객계정으로 거래하는 것

1) 화폐시장 상품(수표·어음 및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2) 외환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4) 스왑·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또는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증서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매출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모든 유형의 집합투자관리·연금기금관리·보관·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하. 증권·파생상품 및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증서를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기재된 활동에 대한 자문·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희망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하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상업적 조건으로 금융서비스 공급에 주로 종사하는 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기능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또는
- 나.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능을 수행할 때,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그리고

자율규제기구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결제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